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3282
----------	------

2025년 11월 28일
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10월 20일, 유만희 의원 외 34명

나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3일

다. 상정일자: 제3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5년 11월 2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유만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, 공원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공공공간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
- 특히, 한강공원은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가 활동을 즐기는 복합 공간으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, 범죄 예방, 사고 대응 체계의 정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.

- 이에 한강공원 내 안전 관리시설의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한강공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, 비상벨 및 음성통화장비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시함(안 제12조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안전 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12조의2는 시장이 한강공원 내에 CCTV, 비상벨, 야간조명,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안전 관리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특히 수영장·물놀이장, 어린이 놀이시설, 야간 사각지대 등 사고·범죄 취약 구역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.

최근(2025년 6월)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유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원 내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, 한강공원 내 안전 관리시설 설치·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우선 설치 대상을 명시함과 동시에 관련 예산편성과 관제센터 연계 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짐.

- 향후 CCTV 등을 통해 수집될 개인정보(영상정보 등)는 「서울특별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서울시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체계를 구축하며, 열람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한강공원 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· 운영) ① 시장은 한강공원 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리시설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1.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
2. 비상벨 및 음성통화 장비
3. 조도 확보를 위한 야간 조명시설
4.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

② 제1항제1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의 시설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수영장, 물놀이장 등 수변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
2. 어린이 놀이시설 및 유아 이용 공간
3. 야간 이용이 잦은 산책로, 화장실 등 사각지대
4.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역

③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시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영상정보의 보호 및 열람 절차에 관한 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·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, 정기적인 유지 · 보수 및 관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<p><u>제12조의2(한강공원 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·운영)</u> ① <u>시장은 한강공원 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</u> 2. <u>비상벨 및 음성통화 장비</u> 3. <u>조도 확보를 위한 야간 조명</u> <p><u>시설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<u>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</u> <p>② <u>제1항제1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의 시설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수영장, 물놀이장 등 수변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</u> 2. <u>어린이 놀이시설 및 유아 이용 공간</u> 3. <u>야간 이용이 잦은 산책로, 화장실 등 사각지대</u> 4. <u>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역</u> <p>③ <u>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시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영상정보의 보호 및 열람 절차</u></p>

에 관한 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, 정기적인 유지·보수 및 관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282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유만희, 강석주, 고광민,
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
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춘선, 서상열, 심미경,
유정희, 이상욱, 이성배,
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
이종태, 이종환, 이희원,
임춘대, 최민규, 허훈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35
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, 공원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공공공간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
- 특히 한강공원은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가활동을 즐기는 복합공간으로,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, 범죄 예방, 사고 대응 체계의 정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.
- 이에 한강공원 내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예기치 못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한강공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, 비상벨 및 음성통화장비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시함 (안 제12조의 2)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한강공원 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· 운영) ① 시장은 한강공원 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시설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1.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
2. 비상벨 및 음성통화 장비
3. 조도 확보를 위한 야간 조명시설
4.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

② 제1항제1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의 시설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수영장, 물놀이장 등 수변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
2. 어린이 놀이시설 및 유아 이용 공간

3. 야간 이용이 잦은 산책로, 화장실 등 사각지대

4.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역

③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시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영상정보의 보호 및 열람 절차에 관한 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·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, 정기적인 유지 · 보수 및 관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2조의2(한강공원 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·운영)</u> ① 시장은 <u>한강공원 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</u> <u>2. 비상벨 및 음성통화 장비</u> <u>3. 조도 확보를 위한 야간 조명 시설</u> <u>4.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</u> <p>② 제1항제1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의 시설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수영장, 물놀이장 등 수변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</u> <u>2. 어린이 놀이시설 및 유아 이용 공간</u> <u>3. 야간 이용이 잦은 산책로, 화장실 등 사각지대</u> <u>4.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역</u> <p>③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시</p>

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
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
영상정보의 보호 및 열람 절차
에 관한 기준은 시장이 정하는
바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
리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
예산을 편성하고, 정기적인 유
지·보수 및 관제센터와의 연계
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
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의2(한강공원 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·운영)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관부서(미래한강본부 기전설비과, 환경수질과)에서 관련 사업¹⁾을 기시행 중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.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추계세제팀장 김중현
추계분석관 이설화
☎ 02-2180-7952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2025년 관련사업 현황(소관부서, 사업명, 예산액, 사업내용)

소관부서	사업명	예산액(천원)	사업내용(일부)
미래한강본부 기전설비과	한강공원 방범용 감시카메라 유지관리	2,320,221	- 폐쇄회로 텔레비전(이하 CCTV)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예산 포함 - 한강공원 내 총 1,244대 CCTV 운영 중 ※ 물놀이·수영장(9대), 어린이놀이터(8대), 산책로·화장실(32대)
	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	2,198,202	- 야간보행 환경을 위한 LED가로등 설치 및 유지 예산 포함
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	화장실 유지관리	3,788,272	- 총 139개동 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음성통화 통신료 예산 포함